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3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4일
발 의 자: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동욱,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서상열,
서준오, 소영철,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현재 반려동물은 '재산'이 아닌 '가족'의 개념에 가까움.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난시설 마련시 시설 내부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음.
포항 지진, 최근 호우 등으로 인한 피난처도 반려동물 동반을 할 수 없어 재난지역에 반려동물이 방치되어 들개, 길고양이 등 양산했다단 비난이 일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재난시 구조부터 피난처 동반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재난 피난처에 반려동물도 동반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의 의미를 제고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방치된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가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발생시 소유자가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에 관한 사항

다. 제2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가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재난 발생시 소유자가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장의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p>	<p>제3조(시장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가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6. (생략) ② ~ ⑭ (생략)</p> <p>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p>	<p>6. <u>재난 발생시 소유자가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⑭ (현행과 같음)</p> <p>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p>

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③·④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 발생시 대피 방법에 관
한 교육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